

확 인 서 면

등 기 의 무 자	성 명		등기의 목적
	주 소		근저당권설정
	주 민 등 록 번 호		
본인확인 정 보	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기타()		
특기사항			
필적기재	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		성 명
우 무 인			
위 본인확인정보에 따라 등기의무자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「부동산등기규칙」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. 년 월 일 변호사·법무사 (인)			